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익신고자 등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 허용 등〉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26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익신고자 등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 허용	3
2. 징역형 처벌기준 강화 및 징역형 · 벌금형 병과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5. 7. 8.
3. 회 부 일 : 2025.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댓글,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형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확보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 징역형 처벌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후단 신설></u> 1. 2. (생략) ② · ③ (생략)	<u>제12조의2(공익신고자등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신고) ① 누구든지 제12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u> <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30조(벌칙) ① ----- -----<u>7년</u>----- ----- -----<u>.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u> 1.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1. 공익신고자 등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 허용

□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한편,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에서 특정 공익신고자의 실명이 공개되고, 해당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공익신고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권익위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신고 제도가 현행법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가 오히려 현행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권익위에 따르면,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신고의 주체가 공익신고자 등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알리는 행위가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 12조의2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이 아닌 누구든지 비밀보장 의무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와 관계 없이 조사가 진행되어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권익위가 해당 신고를 접수하기 전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비밀보장 의무 위반 경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은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은 두지 않고 있음.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제1항²⁾에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2)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직권에 따른 경위 확인과 신고에 따른 경우의 법 규정 형식을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하여 경위 확인 후 후속조치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라는 입법 취지와 별개로 이러한 신고가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신고가 제기되어 사회적 불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조사·확인을 거쳐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위원회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징역형 처벌기준 강화 및 징역형·벌금형 병과

□ 개정안은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와 “공익 신고자등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併科) 가능)”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피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또는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법정형의 상향에 대하여는 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이 다른 법률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타 법의 처벌 수위를 비교하여 볼 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³⁾」의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의 법정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 법⁴⁾」의 개인정보 유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권익위 소관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벌의 균형성 차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신고자 인적사항 등 공개 벌칙 수준 비교>

구분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개정안은 징역형 수준만을 상향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 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은 벌칙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징역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하고 있음.⁵⁾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동등한 처벌

5) 국회사무처 지침,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22. 1. 20. 전문개정)

제45조(법정형) ③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벌금액의 적정수준을 정한다.
2.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수단으로 본다면,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형의 기간에 상응하게 하는 것이 법 적용의 공정성 측면에 부합하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징역형과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에 대하여는 입법례와 병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징역형·벌금형의 병과는 일반적으로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거나 영업에 관한 범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다수의 입법례임⁶⁾. 이에 따라 범죄 수익 몰수와 무관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례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⁷⁾. 따라서 개정안의 병과 제도의 형벌가중적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 관련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형의 병과 규정이 없는 바, 공익신고자등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하여만 병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778

7) 범죄 수익 몰수와 무관한 범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법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참고로, 현행법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수준은 '17.10.31. 개정('18.5.1. 시행)으로 종전('11.3.29. 제정)에 비해 한 차례 상향 조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벌칙 수준 강화 여부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유사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